

교습소설립·운영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8일
교습자	성명	사진 (3cm×4cm)	
	주민등록번호		
	주소		
	학력		
	주요 경력	직업	

교습소명

교습장소

교습과목

1명당 월 교습비 등

부제 횟수

전화번호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습소의 설립·운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교습자)

(서명 또는 인)

○○교육지원청 교육장

귀하

신고인(교습자) 제출서류	1.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(원본도 함께 제시합니다) 3.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4.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교습소 건축물대장(일반/집합)	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 신고인	→	접수 처리기관 (교육지원청)	→	검토 처리기관 (교육지원청)	→	현장조사 확인 처리기관 (교육지원청)	→	결재 처리기관 (교육지원청)	→	신고증명서 발급
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